

설계자	확인자		
		설계년월일	

폴란드 URSUS CHP 발전사업 타당성조사

## 과 업 지 시 서

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

# 목 차

I. 과업지시서.....	1
1. 개요.....	1
2. 과업기간.....	1
3. 과업내용.....	1
4. 과업의 일반원칙.....	8
5. 과업수행 방법.....	11
6. 과업성과품 제출.....	11
7. 보안대책.....	12
II. 예정공정표.....	14

## I. 과업지시서

### 1. 개요

□ 과업명 : 폴란드 URSUS CHP 발전사업 타당성조사

□ 과업목적

- 발주처(Cleveren Holding)rk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URSUS 지역의 Veolia 부지에 Natural Gas를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상업지역에 열 및 전기를 생산하여 운영하는 프로젝트
- 프랑스 Veolia Group에서 투자개발사업으로 선정된 “폴란드 바르샤바 URSUS 열병합 발전 프로젝트”는 바르샤바 외곽 신도시 URSUS 지역에 낙후된 설비의 교체, 부족한 열원의 공급, 천연가스에 수소 10%를 혼소하는 환경 친화적인 설비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열원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
- 이에 따라, 향후 진행될 폴란드 URSUS CHP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법률 및 관련제도, 재무, 세무 및 기술적 타당성을 조사하여 사업타당성 분석 및 원활한 사업개발 활용에 그 목적이 있음

□ 프로젝트 개요

- 프로젝트명 : 폴란드 URSUS CHP(열병합) 발전설비 건설 공사
- 용량 : 전기 121MWe + 열 90MWt
- 사업기간 : 건설 38개월, 운영 18년 이상
- 총 사업비 : 약 3.5억 유로(추정)

### 2. 과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최대 180일

### 3. 과업내용

#### 1) 법률분석

□ 법률분석 Project Document 검토 및 협상

- 각 TOR(과업지시서) 검토
- 관련 계약서 검토
  - Shareholder Agreement
  - Article of Association
  - Partnership Agreement
  - Investment Agreement
  - Financing Model
  - EPC Agreement
  - O&M Agreement
  - Long Term Service Agreement
  - Heat Supply Agreement
  - Electricity Supply Agreement
  - Fuel Supply Agreement
- 계약서 협상
  - Shareholder Agreement
  - Partnership Agreement
  - Investment Agreement
- 본 사업 계약과 관련된 현지법규 조사 및 검토
- 각종 인허가, 외국인 투자법 등 법률 검토 및 위험 분석
  - 열병합 발전사업 관련 법령, 가이드라인 등 법적 사항 검토
  - EPC 수행을 위한 면허 조건 및 취득 절차 검토
  - 외국인투자법 및 관련 제도(정부 고시) 등 검토
  - 사업대상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건, 권한, 제약 등 재무적 투자자 관점에서의 투자 관련 법률 검토
- 유사사업 계약 사례경험을 바탕으로 Risk 검토(연료공급, EPC, O&M 계약, PPA, 송전계약 등)
- Capacity Auction제도 분석 (Capacity Auction 참여 발전사의 의무와 권리 등)

## 2) 기술 검토

- 발전설비 형식 및 최적 운영방안 제안
- Energy Market에서 요청한 열/전기 생산량을 기준으로 기 선정된 Gas Turbine의 계절별 열부하 변동 및 전력부하에 대응하는 최적설비의 구성

## 과 경제적 운영방안 검토

- Gas Turbine 운전 정지시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요구 열 및 전기공급을 위한 설비의 구성과 연속운전 방안 검토 및 제시
- CO2 저감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수소혼소 섬토, 저감설비 확보방안 모색
- 근접한 주거지역의 환경 친화적인 경관 구성 및 주거지역의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의 배치계획 및 방지 대책

## □ 기술적 타당성조사 검증

- Site 지질조사
  - 과거 기 수행된 지질 자료(12공, 10년 전 조사 수행 자료) 분석
  - Poland Energy Market 신청예정인 최종 기술 Data에 근거하여 기기별 적정 Foundation 방식을 확인하기 위한 신규 지질조사 수행
  - 현재 확인되지 않는 지형적 및 지질적인 변화를 확인하여 공사수행 및 사업지연의 Risk를 최소화 (27년 2월 열 공급)
  - 건축 및 토목 구조물 기초 자료 확보

## □ 최적 운영모드를 제시 기술적인 성능 및 경제적인 운영방안 제안

- 계절별 열 및 전기 부하율 고려한 운영 방안-(대기온도별 HBD 작성)
  - 90MWt Heat Load & 108MWe Electricity w/o PC
  - 85MWt Heat Load & 110MWe Electricity w/o PC
  - 65MWt Heat Load & 110MWe Electricity w/o PC
  - 10MWt Heat Load & 108MWe Electricity w/o PC
  - 90MWt Heat Load & 608MWe Electricity with PC 등
- 각 Case 별 운영모드를 통해 효율적인 열 및 전기 공급방안 제안
- 대기온도별 운전 모드 검토를 통해 경제적인 운영 효율성 확보
- Gas Turbine 및 Steam Turbine 운전정지시 PC(Post Combustion) Burner를 이용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열 공급으로서 사업의 안정적인 열 및 전기 판매 수익성 확보 및 기술적인 대안 방안을 검토
- Full Condensing 모드에 대한 설비용량 확보 및 최적운용방안 검토
- 폴란드 및 European Code/standard에 근거하여 주요설비의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주기기, 보조기기, 계통, 연료 및 이송계통, 터빈 및

복·급수 계통, 환경설비계통, 순환수 계통, 기기냉각수 등 주요계통의 환경 친화적인 최적 건설/시공 및 운영방안 제시

- 탄소배출권을 고려한 이산화탄소 절감 방안의 일환으로 수소 혼소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및 제안

□ 경제적인 사업모델을 위한 주요설비의 BAT (Best Available Technology) 형식 및 구성방안을 제안

○ 연료공급 계통

- 지정된 GT MODEL(GE 6F.03)를 연료사용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연료 공급 계통을 제시
- 연료공급량 제한에 따른 각 설비별 운영사항 검토

○ 냉각수 계통

- 냉각방식별 적용방안 검토 (Dry Type Cooling Tower, Wet Type Cooling Tower, Air Cooled Condenser 등)
- 운전 Mode에 따른 Cooling system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검토

○ 지역난방 열 공급방안

- 지역 Heating Network System 운영방안 및 사례검토
- 전력 소모량 감소 시 최대 열 공급을 위한 System 검토
- Plant 효율을 최대로 달성하기 위한 운전 Mode 별 검토 및 조사

○ 발전설비

- 가스공급 및 GT 요구조건을 고려한 최적 가스공급설비 구성을 제안
- 사업의 기술적 보증을 위한 가스터빈, 증기터빈, 배열회수 보일러 성능을 분석 및 예측
- 기계분야 (적용 EN, PL Code & Standards, P&ID, 주요기기 용량계산, 주요 계통별 Configuration을 비교 분석 (2x100%, 3x50% 등))
- 적정 배관 사이즈 및 Route 검토 및 제안 (PMC, Plot Plan)
- 전기 및 계측분야 (EN, PL Code & Standards를 적용한 설비 및 제품의 검토 및 제안)
- 토목/건축 (폴란드 Code 적용기준 및 법적준수사항) 조사
- 소방/설비 (폴란드 Code 적용기준 및 법적준수사항) 조사
- 대기/수처리 (폴란드 Code 적용기준 및 법적준수사항) 조사

- 부지배치계획 검토 및 제안
  - 사업규모에 비해 다소 부족한 사업부지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설비 배치계획을 제안, 주요 설비간의 간섭 최소화, 안정적인 시설 운영관리 방안, 환경영향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치계획,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제시 등
  - 건물높이 제한(21m) 사항과 인접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(150m), 철도 부지경계 제한선의 한정된 부지 여건을 고려하여 최적화 된 주요 시설 배치계획을 제시 (대안별 검토)
  - 주기기 GT MODEL(GE 6F.03), HRSG, Steam Turbine을 기준으로 한 주요시설 배치계획 수립
  - 예정 부지 특성 고려한 환경 친화적인 건물 배치 계획 수립
-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(환경오염 배출 규제 현황 공사시/운영시)
  - 인접한 주거지역을 고려 외부 소음을 최소화 or 방지 방안 제시
    - 기기소음 저감 방안
    - Boundary 외부 저감 방안
  - 폴란드 법적 폐수 방류 기준 검토 및 환경 친화적인 설비계획 제시
  - 기존 Utility 설비 및 조사 및 활용 방안 제안
  - 폴란드 법적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검토 및 설비구성을 제안
    - NOx 저감을 위한 설비 구성을 제안
    -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방안 (Gas Turbine 수소 혼소가능량 검토)

### 3) 재무 분석 및 세무 검토

- 재무모델 분석, 재원조달계획 분석, 경제성 및 재무분석, 사업위험도 분석 (금리 · 환위험 분석 포함), 민감도 및 시나리오 분석 등
- 프로젝트의 사업성 분석
    - 재무분석의 기본가정
    - 총투자비의 산정
    - 재원조달 구조(자금 조달 시나리오 분석 등)
      - 금융조건, 환율변동 및 환전 리스크 헷지 방안 검토 등
    - 매출액의 산정

- 영업비용의 산정
  - 연료비
  - 변동운영비
  - 고정운영비
  - SPV 영업비용
  - 변동운영비
  - 고정운영비
- CAPEX 산정
- 재무타당성 분석결과
  - 매출액 분석
  - 수익성 분석(IRR, ROI, Equity IRR, NPV 등)
  - 안정성지표 분석(DSCR, 현금과부족 발생여부 등)
  - 현금흐름 분석(참여 주주별 현금흐름 등)
  - 원리금 상환가능성 분석(투자 회수 전략 수립 검토 및 환율변동에 따른 대응방안 분석)
  - 프로젝트 IRR 분석
  - 민감도 분석
    - 차입방식, 차입조건
    - 주요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(개발비, 공사비, 운영비, 연료 등)
- 열 수요에 따른 Tariff 산정
  - 매민감도 분석 (고정비 보전 가정)
  - 민감도 분석 (고정비 미보전 가정)
- 전기 수요에 따른 Tariff 산정
- 사업위험 분석(주요 리스크 분석)
  - Public 보증위험 검토(정치적 위험, 계약불이행 등과 관련된 보험 포함)
  - 열 수요 감소 위험
  - 완공위험(자금조달, 부지, 인허가, 완공지연 및 성능미달), 운영위험 (플랜트 성능/가용성 저하, 매출액 불확실성 등 판매 위험), 기타위험 (법률변경 등 정치적 위험, 자연재해, 환율 및 물가변동)
  - 추가 공사비 발생 가능성

※ 과업수행자는 재무모델 검토 완료 후 사업주의 검토를 위해 Excel File 제공해야하며, 해당 자료는 민감도 분석 및 시나리오 변경에 따라 변경

이 가능한 파일이어야 하며 해당 자료 및 Macro 등의 수정이 가능한 버전으로 제출한다

#### □ 세법 분석

- 법인세, 감가상각, 부가세, 원천징수, 이월결손금, 연결납세, 인지세,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, 사회보장세, 부동산세, 인지세 세제 등
- 공사 매입/매출 부가세 및 면세사항
- 수익금 및 사업매각 시 매각대금에 관한 세금, 송금 및 태환 관련사항 분석
- 지사/법인 설립절차 및 관련 세금

#### □ 최적 투자구조 검토

- SPC 주식 매각 관련 세금 및 세법 검토방안 및 세무회계적 Risk 검토
- 투자혜택 및 절세 방안 검토
- 과소자본세제를 고려한 주주대여금 활용 여부 검토
- 기타 조세 혜택 방안

#### 4) “사업주 수행과업”

- 위 1) ~ 4) 분야에서 수행되는 과업과 연계하여 사업주는 아래에 대한 업무를 향후 수행할 계획임.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원활한 협업을 진행하고 “사업주 수행과업”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, “사업주 수행과업”의 결과물을 제공받아 과업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최종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함.
- “사업주 수행과업” 내용
  - 원활한 시장 분석을 위한 현지 정보 및 Network 지원  
(인근 국가 사업주 지사 활용)
  - 원활한 기술분야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술 인력 지원 및 협업  
(EPC 및 O&M 관련)
  - 재원조달 및 최적의 금융조건 도출을 위한 전문인력 협업 및 국내 금융 기관 협의(한국 ECA 기관 등)
  - 사업비, 공사비, 운영비 내역 및 EPC 기술사항 검토
    - 최적 효율을 위한 주기기/보조기기 검토 및 용역사 협업

- 내부 기술 자료 활용한 공사비 적정성 검토 및 현지 공사 단가 검토
- 기자재 운송여건 검토 및 운송 계획 검토
- 시공 계획 수립 및 공정 검토
- 운영비 내역 및 운영계획 적정성 검토
  - 운영조직 구성, 인건비, 전력비 등 현지 비용 수준 검토 및 협업
  - 사전 시장 조사 및 현지 조사 수행
  - 운영기간 동안 발생 가능한 비용에 대한 검토
  - O&M 기술 검토 및 운영비 적정성 검토 및 도출
  - 발전소 운영 계획 검토 및 수립

#### 4. 과업의 일반원칙

##### 자료활용

- 시장조사와 관계문현은 국내 기존자료는 물론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, 통계 등을 반영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
-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,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,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

##### 과업수행원칙

- 최종낙찰자(이하 ‘과업수행자’)는 과업수행 상의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
- 본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 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
- 본 과업의 수행상 시장조사, 법률, 기술, 수요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, 위탁금액, 위탁의 필요성,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
- 외부업무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·기술적 제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(계약상대자, 외부전문기관 포함)가 부담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수행연구자별 세부 업무범위 등을 정하여 우리 공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화정하여야 함

## □ 과업의 변경

-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, 과업 내용의 추가 등으로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
-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
- 기타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

## □ 일반조건

- 과업진행에 대하여 우리 공사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책임자와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공사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
- 각 부문별 과업 항목은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함
-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임의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제반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
- 과업수행 상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,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근거(영수증 등)는 준공 시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
-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우리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

## □ 특별조건

-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,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우리 공사가 소유함  
※ 우리 공사는 과업수행자의 동의 없이 성과품을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음
- 사전승인을 득한 연구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며, 변경할 경우, 기존 인력보다 업무수행역량이 높은 자로 한정하며,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

## □ 성과물 작성

- 사용되는 용어는 국문 및 영문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, 전문용어는 ( )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,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함
- 작성된 최종보고서 원안은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, 그 결과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우리 공사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 인쇄·납품해야 함
- 성과품에 대한 작성방법, 양식, 활자크기,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·결정해야 함
- 공정보고, 현지조사, 착수보고, 중간보고, 최종보고 등 과업수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보고 및 관련자료는 서면과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부터 <사업주 수행> 과업(해당 시)의 결과물을 제공받아 과업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최종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함. 이를 위한 세부 방안은 감독관 및 사업주와 협의하여 결정함

※ <사업주 수행> 과업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수행

## □ 기타

- 과업수행자는 우리 공사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함
-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,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음

## 5. 과업수행 방법

### □ 전문가 자문

- 본 과업내용 관련 기관의 실무책임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중간보고서 제출 전, 최종보고서 제출 전 등 2회 이상 자문계획(자문회의, 토론회, 워크숍 등)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실시하여야 함

### □ 현지조사

- 사업대상국의 인문, 자연, 경제, 법률 및 사업환경 조사 등 내실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사업대상국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조사지역 및 일정, 조사자(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, 위탁 외부전문기관 포함) 등 해외조사계획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실시함
- 과업수행자는 해외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조사 관련 활동 내역 등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

### □ 공정보고 및 추진현황 회의

- 매월 말 기준으로 과업의 추진상황을 작성하여 용역진도보고를 익월 5일 까지 제출해야 함

## 6. 과업성과품 제출

### □ 착수보고

-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,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  - 착수보고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주요내용을 확인하고,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, 과업참여자 명단, 과업수행조직의 편성 및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

### □ 중간보고

- 중간보고는 감독관과 보고일정을 협의하고 보고서 5부를 제출하여야 하며, 동 보고서에는 착수보고 시 확인한 주요내용에 대한 과업수행방법을 구체화하고, 검토한 내용의 잠정결론 및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

- 해당 사업의 현지 파트너 및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중간보고서는 국문 및 영문으로 모두 작성

#### □ 최종보고

- 최종보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하고 조사연구한 최종 내용을 보고해야 함. 단, 최종보고에서 제안된 수정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함
- 최종보고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성과물작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20부를 제출하여야 함. 또한 최종보고서, 기타 참고자료 및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  -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최종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
  - 해당 사업의 현지 파트너 및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최종보고서는 국문 및 영문으로 모두 작성

#### □ 수정보고서

-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5개월 이내에 추정수입 및 운영비 추정 등에 사용된 기초자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보고서를 우리 공사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 10부를 제출하여야 하고, 이 때 수정보고서, 수정 참고자료, 수정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
### 7. 보안대책

- 과업책임자는 국토교통부보안업무시행세칙 제54조(용역업체에 대한 보안 대책)를 준수하여야 하며,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동 세칙에 의한 보안각서(별첨)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, 분실,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,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, 대외비와 일반자료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

-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,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
-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
-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(확정안 포함)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·관리하여야 함
-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
-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,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(업체명, 인가근거, 참여자, 발간일자) 및 원지, 폐지,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함
-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,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
-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때는 필요한 최소부문만 생산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,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
-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,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/시행하여야 함
- 성과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

## II. 예정공정표

항목		30일	60일	90일	120일	150일	180일	비고
1. 시장	국가환경조사 및 전력시장 분석							
	CHP시장 분석							
2. 법률	에너지시장 제도 검토							
	사업관련 계약검토							
3. 기술	기술적 사업타당성 검토 (개념설계 등)							
	기술적 경쟁력 검토							
4. 재무	재원조달계획 및 투자구조 검토							
	재무모델 검토 및 의견							
5. 세무	세법 조사 및 분석							
	세재 및 SPC 운영 혜택 조사 등							
6. 성과품 작성								
보고회		착 수 보 고				중 간 보 고		최 종 보 고
과업 진도 율	당기	10	20	15	20	20	15	
	누적	10	30	45	65	85	100	